

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3. 10. 4.>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나.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
		법인	법인이 아닌 자
가.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1호	10,000	
나.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,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4항	300	100
다.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이를 유지·관리하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2항제1호	2,000	1,000
라.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	법 제69조 제2항제2호	2,000	1,000

마.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2항제3호	2,000	1,000
바.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2항제4호	2,000	1,000
사.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2호	7,000	3,500
아.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3호	7,000	3,500
자.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4호	7,000	3,500
차.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경우	법 제69조 제3항제1호	1,000	500
카.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경우	법 제69조 제3항제2호	1,000	500
타. 법 제22조제1항·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5호	10,000	5,000
파.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. 다만,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	법 제69조 제1항제6호	7,000 (4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,000)	3,500 (4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,000)

<p>다.</p> <p>1)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</p> <p>2)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<p>3)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<p>4) 법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</p>			
<p>하.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69조 제1항제7호</p>	<p>5,000</p>	<p>2,500</p>
<p>거.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. 다만,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.</p>	<p>법 제69조 제1항제8호</p>	<p>7,000</p>	<p>3,500</p>
<p>너.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	<p>법 제69조 제2항제5호</p>	<p>3,000</p>	<p>1,500</p>
<p>더.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,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</p>	<p>법 제69조 제2항제6호</p>	<p>3,000</p>	<p>1,500</p>
<p>러.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</p>	<p>법 제69조 제2항제7호</p>	<p>2,000</p>	<p>1,000</p>

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않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않은 경우			
머.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 은 경우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않 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9호	7,000	
버.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 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10호	7,000	3,500
서. 법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11호	7,000	
어.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의 종류별 로 유지·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12호	10,000	5,000
저.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 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3항제3호	1,000	500
처.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 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13호	10,000	5,000 (법인·조합 ·단체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2,000)